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변 호	2650
------------	------

2025. 4. 23.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3. 31.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회부일자: 2025. 4. 2.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3차 주택공간위원회 (2025. 4. 23.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강옥현 디지털도시국장)

1. 제안이유

- 디지털 분야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은 인공지능(AI)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서울디지털재단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AI) 관련 업무를 재단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기관의 전문성 및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함(제명,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조례의 목적과 재단의 사업에 인공지능(AI) 관련 내용을 명시함

(안 제1조, 안 제4조)

다. 약칭 용어 수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을 수정함

Ⅲ. 검토보고 요지 (윤은정 수석전문위원)

가. 개요

-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디지털재단의 기관 명칭을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 >

조항(안)	주요 개정사항
제명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AI재단
제1조(목적)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AI재단
제2조(적용범위)	· 서울디지털재단 → 서울AI재단 · 자구 수정
제4조(재단의 사업)	· 자구 수정
제9조(이사회)	
제10조(자문위원단)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 약칭 용어 반영 (서울특별시 → 시)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 자구 수정
제14조(수익사업)	
제16조(사업연도)	· 약칭 용어 반영 (서울특별시 → 시)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 자구 수정
제19조(지도·감독)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나. 개정조례안 발의 배경

-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은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생성형 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 의료, 교육, 행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챗봇, 자동화 시스템, 추천 알고리즘 등 시민의 생활방식과 기업 운영,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 서울시는 2025년 2월 ‘AI SEOUL 2025’ 비전하에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 투자 확대, 산업 간 융복합, 글로벌 협력, 시민 확산, 행정혁신 등 7대 핵심 전략을 선포하면서, 서울디지털재단(이하 “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개편하고, 서울시정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행정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정책 기조를 발표하였음¹⁾.
- 이와 함께 3월에는 재단이 주관한 ‘서울 AI 페스타’(검토보고서 붙임2)를 시행하여 시민들이 직접 AI 기술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음.

다. 조문별 검토

- 제명 및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기관의 명칭을 ‘서울디지털재단’에서 ‘서울AI재단’으로 변경하면서 재단의 설립 목적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첨단</u>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u>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u>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u> ----- ----- <u>서울AI재단</u>을 설립·운영하는 데 -----.

1) 오세훈,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 만들 것”…AI 중심의 산업 육성 ‘속도전’(서울시 보도자료, 2025.2.1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u>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 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 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 <u>서울AI재단</u> ----- -----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
---	---

- 재단은 「민법」 2)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지난 2016년 6월 설립되어,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 증진과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음³⁾.
- 재단은 제328회 임시회(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02.25.)에서 AI 전환 대응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의 건을 보고한 바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AI혁신사업본부” 등 주요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음.
- 재단의 명칭과 목적의 개정은 서울시 정책기조에 맞추려고 변경하는 사안으로 이해되나, AI는 디지털이라는 포괄적 개념의 일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사명을 AI에 국한되도록 변경는 것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그 밖의 디지털기술 분야에 대해 재단의 역할이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⁴⁾.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3) 지난 2019년 1월부터 재단의 관리·감독기관이 서울시 경제진흥본부(현 경제실)에서 스마트도시정책관(현 디지털도시국)으로 변경됐으며, 2025년 4월 현재 1실 1본부 7팀, 총 59명(정규직 45명, 계약직 13명)규모로 운영되고 있음(검토보고서 불임3 참고).

4)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일부 발췌

- **안 제4조**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AI를 명시하면서 기존 문구에 근거법령 등을 표기함으로써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하려는 사안임.

현행	개정안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 -----.
1. <u>첨단</u>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u>정책연구 및 컨설팅</u>	1. <u>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u> ----- <u>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u>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u>벤처기업</u> 지원	2. ----- ----- <u>벤처기업</u>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
3. <u>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들의 디지털 역량강화</u>	3.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u>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6. <u>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 협력</u>	6. <u>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u> -- --
7. (생략)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u>법인의</u>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8. ----- <u>재단</u> -----

- 특히 **안 제4조제1호**는 재단의 사업 범위에 연구, 컨설팅 업무 외 ‘교육 문화확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그간 재단이 추진한 ‘어디나 지원단’ 등 어르신 디지털 역량 교육과, ‘스마트라이프워크’ 등 디지털 문화확산을

- 000 위원 : 디지털 범위 안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잖아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솔루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재단 이름을 AI재단으로 바꾸면 오히려 디지털 DX 시대에 한 일부분의 재단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비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디지털이라는 범위가 훨씬 큰 거 아닙니까? 디지털전환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고 그게 전체적으로 화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디지털 관련 산업들, 빅데이터, 인공지능, AI는 그 산업의 일부 아닌가요?
- 000 위원 : 나머지 디지털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산업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일부의 산업에 국한해서 우리 서울시 기구가 비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

추진해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안 제4조제2호**는 ‘벤처기업’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조례에 기재하는 것으로 개정의 이견은 없으나, 서울시의 기업지원에 대한 사업은 분야를 막론하고 “서울경제진흥원”으로 일원화⁵⁾하고 있어 기관의 업무 간 중복의 소지가 있어 보임.
- 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서울앰비지니스센터 운영사업’⁶⁾과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 사업’ 등 디지털 분야의 소상공인 및 벤처기업을 지원해 온 실적을 감안할 때, 향후 재단도 기업지원의 역할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안 제9조(이사회), 안 제10조(자문위원단), 안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안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안 제14조(수익사업), 안 제16조(사업연도), 안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안 제19조(지도·감독), 안 제20조(공무원의 파견)**는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현행	개정안
제9조(이사회) ①·② (생략)	제9조(이사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이사장이 <u>부득이한</u>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u>기재순</u> 으로 그 직무를 대	③ ----- <u>부득이한</u> ----- ----- <u>기재순</u> -----

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진흥 기반 조성 및 운영
2. ~ 6. (생략)
7. 첨단산업 기술진흥, 산업·기술 간 융합인프라 구축 및 지식재산권 지원
8. ~ 9. (생략)
10. 시장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육성사업
11.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

6) 디지털과 관련된 스타트업 회사를 대상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창업 보육 지원 및 네트워크와 투자 유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인프라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34개사, 2018년 49개사를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는 해외전시 참가지원 사업으로 ‘SCEWC’, ‘CES’ 등에 홍보관 조성을 지원하였음.

행한다.

④ (생략)

제10조(자문위원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생략)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생략)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단) -----
---- 관한 자문을 -----
-----.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
시의 -----
-----.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

제14조(수익사업) -----
----- 범위 -----
-----.

제16조(사업연도) ----- 시 -----
-----.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단 -----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도·감독) ① -----
-----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
----- 재단의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무원의 파견) -----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 소속 공무원 -----
-----.

라. 종합의견

- 이 개정안은 재단의 명칭 및 사업 범위를 AI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 및 사회 환경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력을 높이고, 서울시가 미래 디지털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서울시의 디지털 정책 수행과 AI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AI 기술 확산에 따라 시민과 기업의 AI 활용 촉진 및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재단의 사명과 조례에 디지털이라는 광범위한 개념 중 AI분야를 부각시키는 것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체성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재단은 향후 AI 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 충원과 사업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명칭 변경에 따라 기존 사업 및 대외 협력관계에서 혼선이 없도록 충분한 홍보 및 안내조치가 필요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원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를 “서울AI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데”로 한다.

제2조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첨단”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으로, “정책연구 및 컨설팅”을 “정책연구, 컨설팅, 교육, 문화확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벤처기업”을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디지털”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법인”을 “재단”으로 한다.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제9조제3항 중 “부득이 한”을 “부득이한”으로, “기재순”을 “기재 순”으로

한다.

제10조 중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를 “관한 자문을”로 한다.

제12조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를 “시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6조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8조제3항 전단 중 “대하여 재단”을 “재단”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그”를 “재단의”로 한다.

제20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를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로,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8호마목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u> <u>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u> <u>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AI재단</u> <u>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첨단</u>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u>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u>서울디지털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첨단</u>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도시 분야 <u>정책연구 및 컨설팅</u>	제1조(목적) ----- <u>인공지능(AI)</u>을 비롯한 <u>첨단</u> ----- ----- ----- <u>서울AI재단</u>을 설립·운영하는 데 ----- -----. 제2조(적용범위) ----- <u>서울AI재단</u>----- -----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u>인공지능(AI)</u>을 비롯한 <u>첨단</u> ----- <u>정책연구, 컨설팅,</u>

팅

2. 첨단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
도시 관련 중소기업(「중소기
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
지원

3.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시민
들의 디지털 역량강화

4. 5. (생략)

6. 디지털 기술 및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7. (생략)

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이사회) ① ② (생략)

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
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
행한다.

④ (생략)

교육, 문화확산

2. -----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
기업을 말한다) -----
--

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
다), 투자출연기관, 시민 대상
인공지능(AI)기술 활용 등 디
지탈 역량 강화 지원

4. 5. (현행과 같음)

6.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디지털 ----

7. (현행과 같음)

8. ----- 재단-----

제9조(이사회) ① ② (현행과 같
음)

③ ----- 부득이한 -----

--- 기재 순-----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문위원단)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생략)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생략)

③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10조(자문위원단) -----
----- 관한 자문을 -----

-----.

제12조(기본재산의 조성) -----
----- 시의 -----

-----.

제13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범위 -----

-----.

제14조(수익사업) -----
----- 범위 -----
-----.

제16조(사업연도) -----
--- 시 -----
-----.

제18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단-----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u>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u>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 ----- ----- <u>재단의 이사장</u> 에게 <u>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u> ----- ----- <u>재단의</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u>지방공무원법</u> 」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u>소속공무원을</u>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 ----- -- 「 <u>지방공무원법</u> 」 제30조의4----- <u>소속 공무원</u> -----.